

[긴급]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종량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파쇄,소각)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2028.10.31	기초금액 77,781,000 추정가격 70,710,000 부가세 7,071,000

가. 입찰방법 : ※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공동도급의 유형 중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 공동이행방식 불허

나.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935.171톤 위탁처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7.20.(월) ~ 2026.7.27.(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7.22.(수) 10:00 ~ 2026.7.27.(월) 10:00
개찰일시	2026.7.27.(월) 11:00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역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또는 건설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의 허가를 받은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

: 폐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건설폐토석,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폐보드류, 폐판넬류, 혼합폐기물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받은 자**

③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7) 또는 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허가를 받은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허함. 다만,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가능하며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임.

※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는 적격업체 평가대상임

※ 원활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당 현장 주변 업체여야 함

※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정산

- 당초 설계거리(L=30km 적용)보다 감소되는 경우로서 변경 당시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정산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 운반비 감액 정산시 적용 단가는 변경 당시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로 한다. (협의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3호(「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설비·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적용 공고입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7.26.(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본 영역은 적격심사 대상 영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영역>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 기준에 의해 평가하므로 입찰공고 자료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급업체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계획에 따른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결과” C 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심사기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라도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결과가 D등급인 경우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각 평가항

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조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안전수준 평가방법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구분	세 부 내 용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기준금액, 1일평균 수집운반량 및 중간처리량

구분	설계금액(원)	당해 용역 기준 금액(원)		1일 평균 수집·운반량(톤)	1일 평균 처리량(톤)
		수집·운반	중간처리		
파쇄	73,436,000	14,151,962	59,284,038	15.378	10.252
소각	4,345,000	917,125	3,427,875	0.277	0.166

2)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하며, 계약일·계약기간·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금액 받드시 구분)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3) 민간회사 용역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원본대조필)하여야 하고 민간회사 용역실적 인정은 동 기간 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유사용역 실적을 인정합니다.

구 분	처리업종	대상 폐기물	증빙서류	인정비율
동등이상 용역	중간처분 (소각)	가연성 건설폐기물	세부심사기준 [별지 제4호]	100%
유사용역	중간처분 (소각)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	세부심사기준 [별지 제4호의2]	30%

※ 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 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운반횟수는 환경부 평가기준 [별표] 5. 나. 4) 나) “운반횟수 산정기준 표”

에 따르며,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소시간(또는 최단거리) 노선의 길이를 적용합니다.

※ 건설폐기물(소각)의 적격심사 기준 중 순환골재 품질인증,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용역이행능력평가는 만점처리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평가분야 1.이행능력 평가 중 평가항목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나.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관련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분야 2.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집·운반	중간처리(파쇄)	중간처리(소각)	계
분담비율	19.37%	76.22%	4.41%	100%

3)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나항에 의한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사. 선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미달일** 때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류(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를 확인서(최근3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심사포기서(자기평가표를 포함한 공문)를 통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하지 않으나,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할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 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2-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사항

-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171,385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나. 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다. 본 영역은 하도금이 불가합니다.
- 라.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과업지시서) 및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의 내용은 해당용역 공고 시 첨부한 입찰공고 자료 일체로 같습니다.
- 아. 본 영역의 물량 및 적격심사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 및 적격심사 등 : 02-6940-8601(건설공사3부)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등 : 02-3410-7194 (계약부)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7년 7월 2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